

기초생활수급(생계급여)자의 서울 청년수당 지원을 위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개정 촉구 건의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김 경 우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기초생활수급(생계급여)자의 서울 청년수당 지원을 위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개정 촉구 건의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현재 생계급여자 등 기초생활수급자가 서울시 청년수당(월50만원, 최대 6개월간)을 지급받을 경우 이전소득으로 산정되어, 기초생활수급액 외 추가적으로 청년수당 지급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.
-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생계급여자는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다만, 교육·주거·의료급여자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청년수당 지급액이 이전소득으로 산정되는 동일한 문제점이 있습니다.

- 정부는 복지의 보충성의 원리 등에 따라 생계급여와 청년수당 등을 유사사업의 중복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,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 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청년수당의 수혜를 막아 저소득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.
- 실제로 서울 청년수당은 만 19~34세 인구 중 졸업 후 2년이 넘는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50%이내에 속하면 받을 수 있는데,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550만원의 소득이 있어도 청년수당 대상이 될 수 있지만, 월 소득 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 142만원인 기초생계수급 청년은 청년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.
(2020년 기초생활수급 4인가구 기준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의 월소득 인정액은 각각 142만4752원, 189만9670원, 213만7128원, 237만4587원임)
-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기초생활수급 저소득 청년의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돕고 형평성에 맞는 청년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(생계급여) 자에게 서울 청년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의2(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)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